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6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4월 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8,238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, 인명피해 75명, 주택전소 3,265채, 이재민 6,323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
- 나. 특히 경상북도 및 안동시 등 관할 5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되어 주택전소 3,239채, 인명피해 59명이 발생하였고 트랙터 등 농기계 2천여 대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정비와 이재민, 농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임
- 다. 서울시는 영남 지역의 피해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장비와 농기계, 임시주택 등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,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함
- 라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[수입계획 변경사항]

가.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으로부터 자금을 예수받기 위한 “예수금수입” 항목을 신설 하고 예산액 5,00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

나. 이에 따라 수입계획을 당초 2,873백만 원에서 7,873백만 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변 경 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2,873,441	7,873,441	5,000,000	174%
세외수입	100,898	100,898	-	-
경상적세외수입	98,177	98,177	-	-
이자수입	98,177	98,177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98,000	98,000	-	-
기타이자수입	177	177	-	-
임시적세외수입	12,721	12,721	-	-
보조금반환수입	12,721	12,721	-	-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443	2,443	-	-
위탁비반환수입	10,278	10,278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,762,543	7,762,543	5,000,000	181%
보전수입등	1,162,543	1,162,543	-	-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-	-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-	-
내부거래	1,600,000	6,600,000	5,000,000	312%
예탁금 및 예수금	-	5,000,000	5,000,000	신설
예수금수입	-	5,000,000	5,000,000	신설
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-	-

[지출계획 변경사항]

가. 정책사업 “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” 항목의 “타지방자치단체
재해·재난 구호지원” 사업에 5,000백만 원 증액 편성함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2,873,441	2,873,441	7,873,441	5,000,000	174%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5,060,000	237%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5,060,000	237%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51,600	351,600	351,600	-	-
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,000	1,000,000	6,000,000	5,000,000	500%
민간경상사업보조	1,000,000	1,000,000	6,000,000	5,000,000	500%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 운영	277,000	277,000	277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35,000	-	-
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	0	60,000	60,000	60,000	순증
재무활동	734,041	674,041	674,041	△60,000	△8%
여유자금 예치	734,041	674,041	674,041	△60,000	△8%
행정운영경비	3,000	3,000	3,000	-	-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27회 정례회) 대비 정책사업비(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)
20% 초과(236.8%) 변경

※ 2025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‘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사업’
신설 및 여유자금 예치항목 감액 변경(20% 이내 변경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행정국 대외협력과 이예리(☎ 2133-6654)